

감 정 신 청

사 건 2000가합0000 손해배상(기)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감정의 목적

이 사건 건물의 지반을 원상복구하고 파손된 건물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명백히 함에 있다.

2. 감정목적물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지상 원고소유 건물

3. 감정사항

이 사건 건물 파손부분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내려앉은 지반과 건물경사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

4. 감정인 선임의견

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여 개업하고 있는 공인감정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O O O . O . O . 의 원고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제출법원	수소법원	제출부수	신청서 1부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신청기간	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289조).		
감 정 의 의 의	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,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.		
감 정 의 대 상	・법규 : 외국법규, 관습 ・사실판단 : 교통사고원인, 노동능력의 상실정도, 필적・인영의 동일성, 토지・가옥의 임대료, 공사비, 혈액형,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		
기 타	피할 수 있음. 전부터 기피할	다만, 당사자는 기이유가 있다는 기	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선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 · 기피하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336조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